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62

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 구자근 · 김선교 · 최수진

박준태 • 김위상 • 강대식

김기현 • 유상범 • 인요한

강승규 · 김도읍 · 박덕흠

김성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,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,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,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.

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,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,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73조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3조(영장의 발부)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,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,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73條(令狀의 發付) 被告人을 召	제73조(영장의 발부) 피고인을 소
喚함에는 召喚狀을, 拘引 또는	환함에는 소환장을, 구인 또는
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	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
<u> 여야 한다.</u>	여야 한다. 다만, 피고인에게
	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, 피
	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
	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통화
	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소환할
	<u>수 있다.</u>